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번역을 제공합니다. 이 한글번역은 공식적인 영문판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개인정보 보호 통지

개인의 납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권리

귀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소득세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와 누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알려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질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

특정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된 서류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할 때, 신분증명과 세금보고서 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사회보장 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세법 18501, 18621, 18624 조)

정보요구 이유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법 시행을 위하여 세금보고서 정보를 요구합니다. 감사 또는 수금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제공 해야합니다.

불이행 결과

소득기준에 해당되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혹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거짓정보를 제공한다면, 경우에 따라, 우리는 형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면제, 제외, 크레딧, 공제, 또는 조정항목등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과세액이 증가하거나 환불이 지연,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귀하의 납세정보는 다음기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연방 국세청
- 타주 세무 공무원
- 다주간 세금 위원회 (The Multistate Tax Commission)
- 관련 캘리포니아 정부기관과 공무원
- 제삼자, 과세채무 결정 또는 수금시 필요한 경우

과세 채무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고용인, 금융기관, 카운티 등기소, 여행 신탁기금, 처리인, 또는 귀하에게 속한 재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기록보관의 책임:

정보처리국 관리자는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기록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800) 852-5711 (미국내)
(916) 845-6500 (미국의외)
(유료)

편지: DISCLOSURE OFFICER MS A181
FRANCHISE TAX BOARD
PO BOX 1468
SACRAMENTO CA 95812-1468